

수원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가합229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조성호, 조현송

원고보조참가인A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김예지, 이학운, 이해원, 김가해

변론 종결2021. 3. 3.

판결 선고2021.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B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오빠이고, B과 피고는 부부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1) 서울 영등포구 E 대 493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F 대 67.9m²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2004.

2. 10.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9.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 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B은 G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7. 26.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B은 G은행으로부터 3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 24. B을 상대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과 B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70) 및 B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익 중 일부(64%)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87)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5. 1. 9. '원고보조참가인과 B은 위 각 부동산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B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1. 9.자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4) 위 각 부동산 중 B 명의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6. 5. 4. 원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2016. 5. 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B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B 대신 변제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0312)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487)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보조참가인이 B를 대신하여 2012. 2. 1.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각 근저당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전인 2016. 4. 5.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로 합계 347,345,75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B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347,34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의 상고(대법원 2018다254461)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 등 취득 경과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에 2002. 2. 23. 전입신고한 이래 아래 J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인 2011. 1. 20.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1), 위 아파트 소유자인 K으로부터 2011. 1. 3. 4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달 21.

362,068,000원이 역시 같은 계좌로 송금된 후 362,000,000원이 인출되었다.

2) 피고와 L은 2011. 1. 6. L이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M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 2년(2011. 1. 31.~2013. 1.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3. 1. 28. 하남시 아파트 O호(이하 '하남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3. 1. 4. 매매, 거래가액 404,000,000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위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2014. 8. 8.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5) 2014. 8. 8. 고양시 일산동구 P아파트 Q호(이하 '일산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4. 6. 10. 매매, 거래가액 295,000,000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의 경과(B에 대한 파산선고와 원고의 소송수계 등)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3. 1. 4. 하남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B이 그 매수자금 40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가 2014. 6. 10. 일산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B이 그 매수자금 29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9. 7. 16.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2013. 1. 4.자 증여계약의 취소 부분은 철회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B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19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9. 12. 11.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2011. 1.경 H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는데, 피고는 평생 가정주부였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만큼, 위 4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B의 재산이다.

피고는 위 돈으로 J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2013. 1. 4. 하남 아파트를 404,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으로 2014. 6. 10. 일산 아파트를 29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은 결국 B의 재산인 H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B의 차명거래에 불과하다.

1) 2014. 8. 8.자 295,000,000원(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의 증여 B은, 자신의 재산인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피고로 하여금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295,000,000원)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2014. 8. 8.(일산 아파트 매매계약일은

2014. 6. 10.이나, 이전등기일 및 하남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수령한 날이 2014. 8. 8.이다) 피고에게 295,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은 B의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2) 2014. 8. 8.자 295,000,000원(일산 아파트 매수자금) 관련 명의신탁 예비적으로, B이 자신의 재산인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로 하여금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남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2014. 8. 8.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3) 하였는바, 이러한 부부간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은 B의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3) 2014. 8. 8.자 147,500,000원(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의 1/2)의 증여 또는 명의신탁 예비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의 1/2은 B의 소유인데,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로 하여금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295,000,000원)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① 2014. 8. 8. 위 295,000,000원의 1/2인 147,5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② 하남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2014. 8. 8.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모두 피고에게 송금하게 하여 320,000,000원의 1/2을 피고에게 명의신탁4) 하였는바, 이러한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은 B의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J 아파트의 임차인은 피고이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0원은 피고의 재산이다. 특히 피고가 위 500,000,000원 중 일부인 404,000,000원으로 매수한 하남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중 피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피고는 위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중 일부인 295,000,000원으로 일산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B이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 295,000,000원 또는 그 1/2인 147,5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가. 2014. 8. 8.자 295,000,000원(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의 증여

1) 살피건대, '2014. 8. 8.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은 B의 소유이나 B이 같은 날 그 중 29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전제는 원고가 위 하남 아파트 마련의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즉 2011. 1.경 H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이 B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 근거는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2010년, 2011년 무렵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는 것이다(갑 제9, 10호증).

2) 그러나 H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5)

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무렵인 2011년과 그 전 해인 2010년에 피고에게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H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이 B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2011. 1.경 H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을 피고 명의 계좌로 받을 때, B이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비롯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여러 가지 원인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H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이 B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H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이 B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이 B의 소유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거래, 즉 ① J 아파트의 임차, ② 하남 아파트의 매수, ③ 하남 아파트의 임대, ④ 하남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이 B의 차명거래이고, 위 재산들의 소유권 등이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B에게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H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이 B의 소유로서, J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500,000,000원)의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위 J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하남 아파트의 매수자금(404,000,000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B이 피고에게 J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하남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비롯하여 대여, 채무변제 등 B과 피고 사이에 여러 가지 원인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위 2010다46329 판결 참조),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피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하남 아파트가 그 추정이 반복되어, B의 재산으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역시 B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 8. 8.자 295,000,000원(일산 아파트 매수자금) 관련 명의신탁

1) 살피건대, 원고는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그 중 295,000,000원이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이 B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가 하남 아파트의 임차인 S로부터 3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호증), 구체적인 수령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2014. 8. 8.자 147,500,000원(일산 아파트 매수자금 295,000,000원의 1/2)의 증여 또는 명의신탁

1) 살피건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하남아파트의 경우 피고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할 정도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하남 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320,000,000원(또는 일산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295,000,000원) 중 1/2이 B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김동석

판사이은경

1) 2002. 4. 6.부터 같은 해 5. 3.까지는 하남시 R에 주소를 두었다.

2)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 후 위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원고의 주장이라고 설시한다.

3) 원고가 적시한 판결에 비추어 보면 예금주 명의신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320,000,000원에 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인 295,000,000원에 대해서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4) '320,000,000원의 1/2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인 295,000,000원의 1/2에 대해서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5) H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임대차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피고는 2002. 2.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